

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(은행계좌 편)

타인에게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경우



타인의 의뢰를 받고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



타인에게 현금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. 또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.

당신이 양도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
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
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**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**의 벌금

타인을 위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한 경우

사기죄 **10년 이하의 징역**



ひょうごけん けいさつ 兵庫県警察 地바현경찰본부 국제수사과

